

(社)技術用役共濟組合設立은 違法이다

(技術士法 立法推進의 壹個 障礙事例)

(A Violation of law for financial Cooperative of Engineering Service Corporation established by Korea Engineering Services Association)

金 岫 根*
Kim, Suen Guen

1. 머리말
2. 各種共濟組合設立의 法的根據
3. 非營利社團法人認可된 技術 用役共濟組合
4. 不信感招來했던 行政當局者
5. 技術士法立法推進의 虛實
6. 技術士業務關聯法規立法 原則案提案
7. 技術士法單一統合法立案 行政措置確定 提訴促求
8. 맺는말
9. 主要參考文獻리스트
10. 附錄- I 과 II

1. 머리말

技術士立法單一統合法推進을 위한 鬭爭의 一端으로서 本紙에 임의 寄稿한 第一彈인 “技術士業務關聯法規의 違法條項에 관하여”(1990. 8. Vol. 23, No.4)와 第二彈인 “違憲性技術用役育成法改正試案을 論駁하다”에 이어서 第三彈으로 “(社)韓國技術用役協會(以下, 用協이라 稱한다)가 設立한 (社)技術用役共濟組合은 違法이다”를 쓰게 되었다. 用協이 主動이 된 違法(違憲)行爲는 날이 갈수록 可觀·搖地境으로 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다.

技術士會員 여러분! 激憤한 心情을 抑制하여 合法的으로 用協의 違法(違憲)行爲를 萬天下에 告發하고 法廷訴訟으로 그 膺懲(응징)의 鐵鎚를 밖아서 單一立法化 獲得토록 邁進할 것을 다짐한다.

共濟事業이 非營利(社團) 法人으로 될수 있다는 事例는 民主法治國家인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밝히코자 한다.

더욱이, 엔지니어링 振興法의 早速制定努力은 違法的인 共濟組合 設立認可의 合理化를 企圖하는 用協의 詐欺演出로 보아진다.

2. 各種共濟組合設立의 法的根據

2.1 共濟事業의 法的根據

(1) 民法의 關聯條項

- 第31條[法人成立의 準則]法人은 法律의 規定에 依함이 아니면 成立하지 못한다.
- 第32條[非營利法人의 成立과 許可]學術, 宗教, 慈善, 技藝, 社交其他 營利아닌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社團 또는 財團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 이를 法人으로 할 수 있다.
- 第39條[營利法人]①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土木技術士(港灣 및 海岸), (社)韓國技術士會內 技術士法 推進特委 先任幹事

社團은 商事會社設立의 條件에 좇아 이를 法人으로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社團法人에는 모두 商事會社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2] 商法の 關聯條項

- 第46條〔基本的商行爲〕營業으로 하는 다음의 行爲를 商行爲라 한다. …(以下省略)

8. 貸金, 換金其他의 金融去來.

[3] 保險業法の 關聯條項

- 第5條〔保險事業의 許可〕 ① 保險事業(販買·雇傭·都給 기타의 契約에 의한 貸責務 또는 法令에 의한 義務의 履行에 關하여 발생한 債權者 기타 權利者의 損害를 補償할 것을 債務者 기타 義務者에게 約定하고, 債務者 기타 義務者로부터 그 報酬를 收受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財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營爲하지 못한다.(1980. 12. 31 本項改正)

共濟事業(Financial Cooperative Business)로 위에서 引用한 것처럼 特定法人이 아닌 경우

에는 세가지의 關聯法 즉, 民法, 商法, 保險法等의 規定에 따라 商事會社設立의 條件에 따라야 하고, 더욱이 主務部處인 科技處와 財務部의 認可를 받아야 함에도 不拘하고 科技處長官이 民法第32條에 依據한 非營利 社團法人으로 認可한 것은 儼然한 違法인 것이다.

2.2 特定法人의 共濟事業團體現況

別添된 表-1과 같이 特定法人中에서 現在까지 法律로 制定公布된 것은 4件이고, 特定公布를 行政推進中인 것이 1件, 또 公式化된 立法推進中인 것 1件 등으로 되어 있다.

表-1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의 共濟事業은 建設業界가 保證保險事業을 1963年에 始作한 것을 筆頭로 國內經濟가 成長함에 隨伴해서 信用保證의 必要性이 漸増함과 함께 大韓保證保險株式會社가 各種 信用保險의 開發로 社會的인 要請에 副應하여 왔든 것이다. 其後 國內産業의 飛躍的인 發達이 各種産業界에 共濟組合設立의 促進을 가져와서 지금은 特定法人設立推進이 漸増하는 傾向에 놓여 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技術用役業界에도 그 設立

表-1 國內各種共濟組合法에 의한 共濟事業團體現況(SGK, 1991.1.20. 現在)

法名稱	法律番號	制定公布日	關聯法規名稱	備考
建設共濟組合法	1382	1963.7.31	建設業法	
電氣工事共濟組合法	3570	1982.11.29	電氣工事業法	
軍人共濟組合法	3690	1983.12.31	軍人事法 및 軍務員人事法	
機械共濟組合(工業發展法)	3806	1986.1.8	工業發展法第25條(共濟事業團體)	7種의 商工業關係法の 結合으로 이루어진 것임
大韓地方行政共濟會法	1990.12.18 國會通過			
住宅事業共濟組合法案	立法推進中(90.10.5 韓國經濟新聞)			
會社名稱	設立年月日	設立法根據		
大韓保證保險(株)	1969.2.19	保險法·商法·民法第3條		10種以上의 保證保險事業
未詳(安養市 所在)	1990.8月某日	同上		保證保險事業
(社)技術用役共濟組合	1990.3.30 認可	民法第32條에 의거한 社團法人		(違法認可이다)

註記: 共濟會라는 名稱下에 各部處別로 社團法人體가 많이 있으나, 保證保險業務를 取扱지 않는 非營利事業團體이다.

推進이 數年前부터 活性化된 것은 當然한 先進化 趨勢에 따르는 것이기는 하나, 合法性을 具備해야 한다는 것은 立法常識의 基本的인 出發點일 것이다. 參考로 日本의 技術用役業界의 金融發展 事例를 引用하기로 한다.

- 技術士賠償責任保險制度의 新設(1977)
- 技術士協同組合의 設立(1976年, 日本技術士會와

1977年4月, 建設省, 日本技術士會와 大正海上火災保險(株)과 協同)

- 技術士信用保證制度의 設置(1978年8月, 科學技術廳과 日本技術士會)

3. 非營利社團法人으로 認可된 技術用役 共濟組合

用協이 公開한 各種資料中에서 이 組合의 定款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定款은 發起人 用協會員 19人의 署名으로 서울特別市中區西小門洞 55番地 4號所在의 弘益法務法人에서 1989年9月12日 公證된 定款의 全文 75條와 附則 4條로 構成된 內容中 여기에 必要한것 拔萃하여 적는다.

- 第2條[目的]組合은 組合員에게 必要한 保證과 資金의 融資 및 機資材의 購買, 斡旋等을 行함으로써 組合員의 自主的인 經濟活動과 經濟의 地位 向上을 圖謀하고, 技術用役産業의 健全한 育성과 組合員의 技術用役遂行의 質的인 向上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49條[事業]① 組合은 組合員을 爲한 다음 各號의 事業을 行한다.
 1. 技術用役遂行과 關聯있는 入札保證 契約保證, 瑕疵保險, 支給保險等 其他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諸般履行保證.
 2. 海外用役 受注時 主去來銀行 設定 關聯된 保證業務
 3. 受注 받은 技術用役 遂行에 必要한 資金의 融資
 4. 技術用役代金으로 受領한 어음의 割引
 5. 技術用役 遂行에 必要한 關聯 機資材의 購買 斡旋
 6. 技術用役に 關聯한 技術의 改善, 向上 및 教育에 關한 事業
 7. 共同利用 施設의 設置, 運營 및 管理

8. 組合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關聯事業에의 投資

9. 第1號 及至 第8號에 附帶되는 業務로서 組合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

② 組合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事業을 行하기 爲하여 必要한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로 外部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別添된 附錄-I 과 같이 監査院에 特別監査要請後 入受된 附錄-II 에서는 發起人總會에서 決定한 定款에도 科技處의 認可를 받지 못하게 되자, 返戻된 定款을 修正한 것이 附錄-II 과 같은 內容이고, (社)技術用役共濟組合이 作成하여 技術士會에 提供한 것을 轉載하면 表-2와 같다.

筆者의 指摘事項은 다음과 같이 要約하여 技術士여러분의 違法提訴에 同參할 것을 勸誘하는 바이다.

〈定款上의 指摘事項〉

(1) 1989. 9. 12에 公證時(弘益法務法人)의 發起人은 金炯珠氏外 18人이 였고, 1990. 1.10에 公證(서울 公證人合同事務所)時에는 理事長 金炯珠外 9人의 名義로된 差異點에 疑惑이 간다. 즉, 당초의 定款을 科技處가 1990. 3. 20 반려하였다가 修正된 定款(附錄 2) 許可日字 1990. 3. 26로 하는 短期日內의 定款修正이 總會를 거쳤는지 疑問이 간다.

(2) 社團法人의 名稱을 그대로 더 두고, 定款第2條와 第4條를 全面改正한 것은 當初에 意圖한 事業과 目的을 隱弊한 故意的 文書偽造와 發起人 및 組合員에 대한 詐欺行爲로 볼수 밖에 없다는 데 驚歎을 禁할 길이 없다.

(3) 共濟事業은 金融業의 一種이다.

(4) 許可된 定款第2條대로 한다면 社團法人名義를 (社)技術用役相助會라고 해야 하는데 法人名을 그대로 쓸수 없다는 常識도 저 버리고 말았다.

(5) 組合은 組合員 相互扶助精神을 바탕으로 한 事業”……도 目的을 規定化 했지만 이것은 亦是 保險法 第5條에 抵觸이 된다는 것을 強力히 指摘한 要點이라 할 수 있다.

(6) 技術用役共濟組合案內書(1990. 7. 1 現在)에는 1年後 엔지니어링振興法 通過后 保證保險事業을 한다고 적혀 있음.

(7) 附錄-II 에 添付한 것처럼, 第一銀行 島山路支店에 組合融資金을 預託하고, 申請人(用役業

表-2 정관상 목적과 사업대비표

기관명 : (社)技術用役共濟組合(提供分, 1991.1.30)

구 분	陳情요청한 정관(定款)	許可된 定款
(목 적)	제 2 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기자재의 구매알선등을 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기술용역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조합원의 기술용역 수행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목적) 조합은 조합원 상호부조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기술용역업의 건전한 육성과 조합원의 기술용역수행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업)	제 49 조(사업) 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기술용역 수행과 관련있는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증, 지급보증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이행보증 2. 해외용역 수주시 주거래은행 설정에 관련된 보증업무 3. 수주받은 기술용역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4. 기술용역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의 할인 5. 기술용역수행에 필요한 관련 기자재의 구매 알선 6. 기술용역에 관련한 기술의 개선·향상 및 교육에 관한 사업 7.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8.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9. 제 1 호 내지 제 8 호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사업) 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기술용역사업의 개발 및 향상에 관련한 지원사업 2. 조합원과 공동복리를 도모하는 사업 3. 조합원간에 기술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조달사업 4. 조합원이 공동이익 시설의 운영과 관리 5. 조합원이 개발한 품질 인증과 권리취득 및 보급 6.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體)의 支給保證債務 一切를 組合이 履行한다는 保證下에 支給保證業務를 實行하고 있는 違法行爲를 犯하고 있다.

定款의 事業과 目的을 全幅 改正했어도 社團法人으로 許可된 處事는 非營利事業이라는 隱蔽欺瞞行爲로 밖에 理解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게 된다.

이것이 어떠한 法的解釋으로 非營利團體로 看做되어 民法第 32 條에 適合한 團體로서 科技處가 社團法人許可를 1990 年 3 月 30 日에 하였던 것인지 全的으로 理解할 수 없는 違法行爲로서 技術士法立法推進에 한 障害要素의 產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不信感招來했던 行政當局者

技術士에 對한 不信感招來는 勿論, 社會的物議

를 이르켰던 二大不信行政處理事例를 적어, 社會的輿論喚起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ㄱ) 認定技術士 및 高級技術者에 관한 違法事例(技術用役育成法의 違憲性)

이미 第 1 彈(技術士會誌, 1990. 8. Vol.23, No. 4)에서 指摘했드시, 現行實定法運用에 있어서 違法行爲는 常例化하다 시피 하고 있다는 것이 實證되었다.

즉 母法의 根據없이 行政當局이 立法權을 超越해서 技術用役育成法施行令의 附則規定에다가 “定義”를 條文化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立法原則上 附則에는 施行令이나 經過措置等を 條文化하는 것인데 이것을 無視하여 母法의 定義(大概, 第 2 條에 屬한다) 條項을 設定한 事例도 大韓民國의 立法歷史上 科技處가 첫번째로 그 汚點을 犯했다고 본다. 다시 적건대, 1977 年 7 月 16 日, 法令第 8632 號의 附則第 2 條를 明示하

기로 한다.(認定技術士가 登場하기 始作한 嚆矢가 된다.)

『第2條(認定技術士)①이 令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한 認定技術士는 當該 用役業體에서 繼續勤務하는 境遇에 限하여 別表-4의 技術士와 同等한 資格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4年制 自然科學系 大學을 卒業하고 當該 專攻分野에서 10年以上 勤務한 者로서 技術士에 相當하는 知識 및 技術이 있다고 科學技術處長官이 認定하는 者(以下 “認定技術士”라 한다)는 別表-4의 技術士와 同等한 資格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技術士만으로 充當할 수 없다고 認定되는 專門分野에 限한다.

③ 認定技術士의 認定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科學技術處長官이 定한다.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認定技術士의 認定期間은 1981年(2月 31日)까지로 한다.』

위의 附則第2條는 國家技術資格法第5條(類似 資格禁止)에 違反한 事例로서 儼然한 違憲이다. 本人이 이에 對하여 數次에 걸쳐서 公共然하게 違憲이라고 主張하기 前까지 누구하나 이것을 違憲指摘이라 하지 못했던 非民主化時代의 政治 風土때문에 冬眠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 民法第39條를 違反한(社)技術用役共濟組立設立許可의 事例

지금까지 認定技術士나 高級技術者로 呼稱되는 定義를 非法定用語로서 1977年以後 違法常用한데 이어서, 더한층 違法行爲를 繼續하고 있는데 憤慨하여 筆者는 附錄-1과 같이 監査院長에게 特別監査要請을 1991. 1. 3. 決行하기에 이르렀다.

政府當局을 告發하지 않을 수 없는 段階에 이르게 된것도 源泉的으로는 行政當局에 責任이 있다는 것과 用協의 自體反省과 良心宣言(謝過 畝)을 期待한다.

5. 技術士法立法推進의 虛實

5.1 行政當局者와 用協實務者의 法律常識

첫째로, 技術士法立法推進을 위해 90年度에는 政府招請懇談會에 90. 1. 24, 과 90.4. 20, 二次에 걸쳐 參席한 일이 있고 90. 12. 18에는 技術用役共濟組合設立認可經緯를 確認키위해 3次에 걸쳐서 行政當局者와 直接 面談한 바 있었는데, 對話

內容에서 느낀 點은 一般的으로 法律常識에 精通하지 못하다는 것은 上下級者를 莫論하고 一般化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수가 있었다. 즉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味安하지만)

(i) 憲法中 衡平의 原則(第11條), 科學技術者의 權利의 法的保護(第22條), 科學技術人力의 開發促進(第127條)

(ii) 實定法의 關聯條項과의 法的連繫事項

(iii) 法令의 適用과 解釋未洽

(iv) 法令運營의 亂脈露出

(v) 法令相互間에 矛盾抵觸의 發生無視(輕視)

둘째로, 用協實務者가 위에서 指摘한 5種의 法令運營原則을 熟知하고 있었다면 技術用役共濟組合의 社團法人許可라는 犯法行爲를 恣行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民主化法治國家에서 이와같은 非民主的이고 違法行爲가 6共에 와서도 저질러 진다는 것은 用協側의 過欲에서 行政當局者가 그에 便乘하여 無意識的으로 國家公務員法第56條에 條文化된 誠實義務遂行에 違背된 일을 하였는지 알수 없는 일이다. 그 責任의 大部分은 用協實務者의 強要 壓迫許可 推進에서 派生된 것이니, 用協側이 全的인 責任을 져야 할 것이다. 別添된 表-2은 筆者가 本會誌에 法律常識原稿를 過去 投稿掲載된 것이며, 일찍이 1986年 9月號에 “技術共濟組合設立의 提案”을 力說한 바 있었고, 이 內容을 用協側任員의 大部分도 技術士會員이 었으니, 읽어본 일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指摘했듯이 왜 社團法人 아닌 商法에 의한 株式會社로 設立하지 않았는지 到底히 理解할 수 없는 違法行爲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1973. 12. 31. 法第2672號>

5.2 國家技術資格法의 虛實과 問題點

(ㄱ) 國家技術資格法의 問題條項

(1) 法第1條[目的] 이 法은 技術資格에 關한 基準과 名稱을 統一하여 適正한 資格制度를 確立하고 그 管理와 運營을 效率化함으로써 技術人力의 資質 및 社會的 地位의 向上과 經濟開發에의 寄與를 目的으로 한다.

(2) 法第2條[定義] ① 이 法에서 “技術資格”이라 함은 産業과 關聯이 있는 技術分野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技術士·技能長등 技術分野

表-2 (社)韓國技術士會誌에 掲載된 法律關係原稿 list(SGKim)

Vol	No	年月	題 目
23	6	1990.12	違憲性技術用役育成法改正試案을 論駁하다.
23	4	1990.8	技術士業務關聯現行法規의 違法條項에 關하여
19	3	1986.9	技術共濟組合設立의 提案
18	4	1985.12	技術士業務를 위한 國內法規 및 西歐先進國의 標準 約款에 關하여
21	2	1988.6	技術士業務를 위한 法律常識(資格取消)
19	1	1986.3	國家技術士法의 草案
19	2	1986.6	科學技術人財保護法提案
16	1	1983.3	西歐의 建設工學紛爭處理와 運用에 關하여 (1)
16	2	1983.6	同 上 (2)
16	3	1983.9	同 上 (3)

註記: 法律關係에 관한 筆者의 原稿는 이 以外에도 土木學會誌 1件, 韓國技術(用協發刊) 1件等이 있다.

의 資格을 말한다(1983. 12. 20. 本項改正) ②
.....(以下省略함)

첫째, 여기서 筆者가 指摘하는 問題點은 위 2個 條項에서, 첫째 目的대로 技術資格에 관한 基準과 名稱을 이 法에 依하여 統一運用이 되어, 過去 各部處別 各種名稱의 資格과 基準을 定하는 일이 이 法으로 이루어져서 그 目的을 完遂하였으므로 이 法을 全面 或은 部分改正을 하여서는 우리가 願하는 技術士法單一統合法으로 될수 없다는 點을 指摘하고 또, 技術士의 資格과 基準統一化作業(法的)이 制定公布後 이루어졌으므로 이제는 이 法을 廢法하거나, 或은 技術士條項만을 法改正으로 削除하는 것이 社會的法的 基盤化에 이바지 하게 될것이다. 이 點을 忘却하고 問題視하는 첫 焦點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實情에 있다.

둘째, 第2條定義의 條文化에서 重大한 明示條項이 없는것은 大韓民國實定法律에 이 法뿐이라는 것이다. 즉 技術士라는 法定用語의 定義가 없고, 筆者가 調査한 바로는 15個實定法의 資格(國家檢定)者의 名稱에는 定義가 條文化 되어 있다는 것이다. 唯獨 이 法만 없다. 즉 辯護士, 公認會計士, 醫療人(醫師, 齒科醫師, 漢醫師 등 其他), 建築士, 辨理士, 藥師, 法務士, 公認勞務

士, 海枝士, 航空從事者, 土地評價士, 導船士, 調理士, 營養士, 稅務士, 原子力法에 依한 原子爐 操縱責任者等 모든 法定定義가 規定化되어 있다는 것을 指摘하고 이러한 問題點을 갖는 法の 運營上, 法的用語上의 解釋에 基準이 없는 立法未洽한 事例라 할 수 있다. 技術士法(1976年廢法)에도 技術士의 定義가 있었던 것을 이 法으로 代替하면서 왜 定義化하지 않았는지 알수 없는 일이다.

(나) 國家技術資格法運營의 虛實

이 法의 第5條(類似檢定の 禁止)와 第10條(技術資格取得者에 대한 優待)은 法的保障等(行政上과 함께)의 未洽으로 優待는 커녕 薄待를 받은 事例로서 母法의 根據없이 認定技術士制를 1977年 7月부터 改正告示로 恣行하였고, 또 1984年에 이르러서는 技術用役育成法施行令의 別表-4, 備考-2項에 高級技術者의 定義를 내리는 違法行爲等은 이 法第5條의 規定에 違反한 것으로, 同法 第17條(罰則)에 따라 處罰한 바가 있었다는 報道를 본적이 全然 없었다. 勿論, 行政當局이 違法한 것은 自體處罰을 定하는 길이 있는지 몰라도 이것은 儼然한 違憲行爲인 것이다. 이와같이 國家技術資格法의 運營上虛實을 招來하였으므로 마땅히 이 法에 대한 問題를 法的補完 或은 어떠한 行政措置를 即刻 取했어야 하는 일이다.

6. 技術士業務關聯法規立法原則의 提案

法律專門家에게 要請하거나, 非法律家가 立法草案한 것을 專門家에게 스크리닝 或은 諮問을 구하는 일 없는듯이 지금까지 用協側에서 作成提案한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筆者(其間法律工夫를 조금한)가 提案한다.

- 法令案起草一般原則을 遵守하여야 한다. (要參照 R-3, 技術士會 90年度補修教育教材)

- 合憲性を 가져야 한다. 즉, 違憲判例等を 參照하는 것은 勿論이거니와 우리 技術士法 立案에는 憲法第11條, 同第22條 및 第127條3項等の 憲法趣旨에 違背되는 立法草案은 基本的으로 回避하여야 한다.

- 直接關聯이 있는 現行實定法과의 關係定立

이確實하게 되 있어야 한다. <事例>共濟組合은 特定法人이든 商社會社等 그 設立에는 民法·商法·保險法等은 最小限의 實定法이고, 이것을 關聯짓지 않고, 民法第32條에 依據한 社團法人 認可는 行政當局者의 重大한 過誤라 하지 않을수 없다. 즉, 科學技術振興法, 國家技術資格法等 約30個의 現行法과의 關係를 考慮하여 技術士法 立法을 하여야 하는 바와같이 雄大한 法的關聯체 크리스트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 母法, 同施行令, 施行細則案 및 經過措置等 一聯의 立法草案으로 構成되는 要素를 母法만 立案해 가지고 立法推進하는 것은 後進國型立法 方式이라 本人은 主張한다.

行政府의 官權을 民意로 抑制防護하기 위해 日本처럼 母法에 우리나라 施行令 같은 條項까지 立法化하여 行政府가 立法權을 超越해서 恣意的·便宜의으로 行政權을 行使못하도록 막아야 한다.(事例, 最近改正된 日本 技術士法) 즉, 現行 技術用役育成法上의 根據도 없이 施行令에 高級 技術者의 定義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立法上 막아야 한다.

• 新立法의 構成規定條項은 立法權과 行政權의 限界를 明確히 하여 違憲條文化를 止揚하도록 努力하고 또, 先進化·合理化·國際化 및 經濟成長에 隨伴하므로써 社會의 法的基盤의 鞏固化를 期하여야 한다.

• 立法上 新設條文化 해야할 根據資料(先進國 法規事例·實績·統計資料等)을 必히 具備하도록 한다.

7. 技術士法單一統合法(資格과 業務)立案 行政措置確定에 관한 提訴促求

公式의으로는 85年度부터 技術士會가 其間 技術士法立法推進을 해 왔으나, 別 進展이 없었고, 또 用協側의 頑強한 立法推進反對로 科技處·用協·技術士會는 舌戰·相互牽制로 原點에서만 맴돌고 있는 實情인즉, 여기에 法廷斗爭으로 法的公休日(부처님오신날)을 佛教徒가 갖게 된 事例를 적기로 한다.

筆者의 記憶으로는 70年代中葉이라고 생각 되는데, 佛敎界가 釋迦牟尼誕生日의 法定公休日 制定을 위해 많은 努力을 하여도 爭取되지 않으므로 政府를 相對로 訴訟을 提起하여 勝訴 끝에 法定公휴일로 定했다 事例와 같이 우리 技術士는 이에 關聯된 實定法이 違憲訴訟提起와 함께 標題와 같은 提訴로서 法的確定判決로 政府當局이 立法化를 하도록 確定짓는 提訴를 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技術用役共濟組合 設立認可 같은 違法事例가 繼續되지 않는다는 保障도 없고, 行政當局者의 言質만 갖고는 法治國家에서는 立法推進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會員各自가 認識銘記하시기를 바랍니다.

8. 맺는말

用協이 現行 技術用役育成法을 改正해서 技術用役共濟組合을 特定法人化하는 줄로만 알고 있다가, 90年 12月初 技術用役共濟組合案內(用協發刊 1990. 7. 1 現在)와 技術用協共濟組合定款(1989. 9. 12. 및 1990. 1. 10.에 두번 公證認可된 것)을 보고, 이것을 科技處에 가서 90. 12. 18. 確認한 結果 이 原稿를 쓰게 된 것이며, 民法第39條를 違反하면서까지 設立認可를 받는 用協의 法律的常識의 熟知促求와 技術士法立法推進上의 障害物除去를 위해 寄稿한 것이다. 技術士會員여 러분 우리는 法治國家에서 살고 있는지 다시한번 瞑想에 잠겨 봅시다.(1991. 1. 23 脱稿)

9. 主要參考文獻리스트

(R-1) 技術士會誌 Vol.23, No.6, 1990. 12.

「違憲性技術用役育成法改正試案을 論駁하다」
By 金洵根

(R-2) 技術士會誌 Vol.23, No.4, 1990. 8.

「技術士業務關聯現行法規의 違憲條項에 관하여」
By 金洵根

(R-3) 韓國技術士會刊, 90年度技術士補修教育用 教材, 法制處法制企劃官 安昌洙 “法令의 制定과 그 運營” pp. 79~97 要參照

10. 附錄－I；監査院에 對하여 科技處 및 (社)韓國技術用役協會가 設立(認可)한 (社)技術用役共濟組合의 特別監査要請書의 寫本一通

附錄－II (社)技術用役共濟組合에서 提供받은 科技處에서 認可된 定款 및 支給保證書의 寫本一式

附錄－I：筆者의 監査要請書 寫本
受翰者：監査院長 金永駿氏 貴下(서울特別市鍾路區 三清洞 山2-26)

題 目：科技處 및 (社)韓國技術會에 對한 特別事務監査要請

適用規則：(1) 監査法第 24 條(監察事項) 1 項 및 豫算會計法

(參照)法則 (2) 國家公務員法第 5 條(誠實義務)

(3) 公益法人의 設立運營에 對한 法律第 17 條(監査等)

(4) 適法第 46 條(基本的商行為)8 項과 17 項

(5) 民法第 32 條와 第 39 條(營利法人)

(6) 保險業法第 5 條(保險事業許可) 1 項

特別事務(會計會)監査要求事項：

1. 本人은 (社)韓國技術用役協會가 1986.5.21, “엔지니어링 研修를 위한 教材開發(Project Management) 研究의 政府豫算受注事業(建設分野)”의 實務委員으로 委囑되어 上下卷計 417 面을 完成納品(原稿)하였던 일이 있었으며 何等의 理由없이 現今까지 原稿未拂額 一金壹拾八萬圓이 未支給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儼然한 違法行爲로서 適用法規 (1)과 (3)에 依據하여 特別會計監査를 實施하여 關係者에 對한 應分の 措置를 要求합니다.

2. 科技處가 1990.3.30. 許可한 (社)技術用役共濟組合設立은 別添定款과 같이 相馳함에도 不拘하고 民法第 32 條에 依據한 것이다. 이것은 民法第

39 條 및 適用法規 (4)와 (6)項의 違法이므로 即時業務執行停止 및 解散을 勸告하고, 雙方의 關係 當事者의 違法行爲를 徹底히 監査하여 依法處罰할 것을 強力히 仰請합니다.

(社)韓國技術士會 理事 金岫根

技術士會內技術士法立法推進特別委員會 幹事
監査要請人 現住所：水原市長安區亭子洞 395 番地 東信④104-301 號

連絡處：韓國技術士會事務局 Tel:

566-5875 或은 557-1352

有添資料一式(社)技術用役共濟組合의

定款拔萃分

CC：金圭泰會長. 技術士會事務局

〈特別監査要請에 添付된 定款의 拔萃分〉

技術用役 共濟組合 定款

第 1 章 總 則

第 1 條(名 稱) 本 組 合 은 技 術 用 役 共 濟 組 合 (以下 “組合”이라 한다)이라 한다.

第 2 條(目 的) 組 合 은 組 合 員 에 게 必 要 한 保 證 과 資 金 의 融 資 및 機 資 材 의 購 買, 斡 旋 등 을 行 함 으 로 써 組 合 員 의 自 主 的 인 經 濟 活 動 과 經 濟 的 地 位 向 上 을 圖 謀 하 고, 技 術 用 役 產 業 의 健 全 한 組 合 員 의 技 術 用 役 遂 行 의 質 的 인 向 上 에 寄 與 함 을 目 的 으 로 한 다.

第 3 條(主 事 務 所 等) ① 組 合 의 主 事 務 所 는 서울 特別市에 두고 必要에 따라 支部 또는 出張所를 둘 수 있다.

② 第 1 項의 支部 및 出張所의 設置,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規程으로 定한다.

第 4 條(定款의 變更) ① 組 合 의 定 款 變 更 은 組 合 員 總 數 의 5 分 의 1 以 上 의 連 署 로 發 議 하 거 나, 理 事 會 의 決 議 에 依 하여 發 議 한다.

② 第 1 項의 規定에 依하여 發議된 定款變更案은 總會에서 總出資座數의 3 分의 2 以上의 贊成을 얻어 科學技術處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5條(登記) 組合의 主 私務所의 所在地에
다음 各號의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1. 目 的
2. 名 稱

附錄-Ⅱ: 監査要請後入受資料

技術用役共濟組合定款

서기 1990년 3월 31일 기재 16331-3127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第1章 總 則

第1條(名稱) 本組合은 社團法人 技術用役
共濟組合(以下“組合”이라 한다)이라 한다.

第2條(目的) 組合은 組合員 相互扶助 精神
을 바탕으로한 事業을 行함으로써 技術用役業

의 健全한 育成과 組合員의 技術 用役 遂行의
質的인 向上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主事務所等) ① 組合의 主 業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두고 必要에 따라 支部 또는
出張所를 둘 수 있다.

② 第1項의 支部 및 出張所의 設言·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規程으로 定한다.

第4條(事業) 組合은 組合員을 爲한 다음
各號의 事業을 行한다.

1. 技術用役事業의 開發 및 向上에 관련한 지원
사업
2. 組合員과 共同 福利를 도모하는 事業
3. 組合員間의 技術用役 遂行에 必要한 기자재
조달 사업
4. 組合員의 共同 利益 建設의 運營과 관리
5. 組合員이 開發한 品質 인증과 권리 취득
및 보급
6. 第1號 내지 第5號의 事業에 限定되는 事業

등부 1989년 제 5649 호

인 증

위 技術用役共濟組合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 梁承澤 동 金炯珠 동 金種圭 동 李京雨 동 金仕準 동 李慶植 동 崔錫煥
동 申東秀 동 崔相弘 동 成百詮 동 金璟麟 동 株式會社 大宇 엔지니어링 代表理事 南正鉉 동 全兢
烈 동 郭永馱 동 泰秀雄 동 大林 엔지니어링 株式會社 代表理事 金炳珍, 동 李相守, 동 鄭夏五,
동 裒鼎濤, 동 代理人 이봉현은

본직의 면전에서 위 정관의 기명 날인을 본인등이 자인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본직은 위 촉탁인의 대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 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이에 이를 인증한다.

일구팔 년 월 일

작성자 공증인가 홍 의 법 무 법 인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5의 4
담당 변호사

등부 1990 1월 10일 2240호

위 기술용역 공제조합 정관

에 기재된 이사장 金炯珠

이사 裴鼎潏 이사 李相守

이사 金炳珍 이사 金仕準

이사 李京雨 이사 崔相弘

이사 梁承澤 이사 郭英勳

감사 泰秀雄 의 대리인 홍세화는

본직 면전에서 본 정관에

기명날인은 본인이 자인하는것이라고 진술하다.

이에 이를 인증하다.

지 급 보 증 신 청 의뢰서

제 호

제일은행 도산로 지점장 귀하

귀행과 1990. . . 채결한 지급보증 채무약정에 의거 신청인의 지급보증채무일체를 당조
합이 이행하겠아오니 다음 내용에 의거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 음

신 청 인	보증종류	보 증 처	피보증채무의내용	보증금액	보증기일	비 고

첨부 지급보증 신청서 1부

1990. . .

기술용역 공제조합
이사장 김형주 인

지 급 보 증 서 발 행 확 인 서

제 호

기술용역 공제조합 귀하

귀 조합 제 호 지급보증 신청의뢰서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다 음

신 청 인	보증종류	보 증 처	피보증채무의내용	보증금액	보증기일	비 고

1990. . .

제 일 은 행 도 산 로 지 점
지 점 장 인

11. 追記事項

本原稿는 1991. 1.22. 事務局에 提出하여 91年度 2月號에 掲載코져 執筆한 것이나 編輯事情上 保留되는 바람에 餘裕가 생겼고 追加된 書翰(公的)往來事項을 補充할 必要上 追加事項으로 적게 된 것을 諒察하시기 바랍니다.

附錄-Ⅲ은 技術用役共濟組合許可申請時의 定款(發起人總會通過分)(附錄-Ⅰ 要參照)과 그것이 返戾되어(90. 3. 20) 同組合理事長과 理事 8人과 監事 1人 名義로 된 改定된 定款(附錄-Ⅱ)이 不過 1週日만에 電擊적으로 提出된 것은 發起人總會의 認准을 거치지 않은 듯한 印象을 주는 事務處理의 內容이 담겨져 있다.

附錄-Ⅳ은 民法第32條에 依據한 것으로 違法이 아니라고 主張한데 대하여 繼續해서 反駁하는 內容을 具體의 事由를 들어서 列舉한 것이다.

附錄-Ⅴ은 本人이 財務部長官에게 本件에 관한 質問에 回信을 받은 內容으로 되어 있다.

이 回信內容을 要約하면 違法判決은 司法機關에 맡기는 것으로 하되, 判例를 들어서 技術用役共濟組合의 社團法人許可가 違法임을 暗示하고 있다는 點일 것이다.

技術士여러분의 良識에 그 違法判斷은 맡기며 技術士立法推進에 障害物의 첫고비가 不信行政을 自招하는 科技處의 實務者에 있다는 것은 再三 알게 될 것이다.(1991. 3. 24. 脫稿)

附錄-Ⅳ

受翰人住所: 서울特別市 鍾路區世宗路

77-6 綜合廳舍

受翰者: 財務部長官 貴下

題 目: 技術用役共濟組合設立 社團法人許可違法에 關한 質問書

適用法規: (1) 民法 第32條 및 第39條

(2) 保險業法 第5條 第1項

(3) 商法 第46條 8項과 17項

(4) 國家公務員法 第56條(誠實義務)

參照公翰:

(1) 監查院의 特別事務監查要請

(1990. 12. 31) / 金 岫根

(2) 科技處감사 01254-838(1991. 1.25) / 감사 01254-1091

(1991. 2. 1) / 감사 01254-1675(1991. 2. 20)

(3) 監查院 오삼 01254-22(1991. 2.19)

(4) 科技處公翰에 對한 回信: 1991. 2. 6 / 1991. 2. 25 두가지

質問事項:

(1) 民法 第32條에 依據하여 別添定款(90. 3. 26 申請分)과 같이 科技處 單獨으로 設立許可한 것은 違法인데, 科技處는 合法이라고 한데 對하여 異義가 있습니다.

(2) (社) 技術用役共濟組合의 書式인 “支給保證申請 依頼書”를 보면 保險業法 第5條 第1項에 依據하는 事業으로 보는데 貴部の 意見은 質問하며, 아울러 違法時에는 依法措置를 仰望하나이다. 끝.

(社) 韓國技術士會 理事 金岫根 拜上
發信人現住所: 京畿道水原市 長安區亭子洞 3
95番地 東新㉠ 104-301號

別添: 壹件書類壹式

寫本配布處: 監查院, 科技處, 技術士會

(다음은 科技處와 財務部에서 온 回信內容)

과 학 기 술 처

감사 : 01254-1091 503-7614 '91. 2. 1.

수신 : 김순근 귀하(수원시 정자1동 395, 동신아파트 104-301)

제목 : 민원회신

1. 관련근거

가. 감사원 감사 01254-52호 민원서류이송('91. 1. 16)

나. 우리처 감사 01254-838호 민원중간회신('91. 1. 25)

2. 위호 관련 귀하의 민원사항중 원고료 미지급전에 대한 조사결과, 한국기술용역협회 관련자의 진술과 회계서류(인건비 지급영수증)로 보아 귀하의 주장과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협회관련자와 귀하의 대질이 불가피한 바, 귀하와 연락이 닿는대로 적극 해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 그리고 기술용역공제조합 관련건은 귀하가 예시한 사단법인 기술용역공제조합 정관은 목적사업 내용이 영리사업을 주로하고 있어 귀하의 주장과 같이 민법 제32조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허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처에서는 이미 반려('91. 3. 20) 한바 있습니다. 그후 동 법인이 '91. 3. 26자 민법 제32조 규정에 적합한 설립허가 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허가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과 학 기 술 처 장 관

재 무 부

보험 : 01254-82 (503~9236) 1991. 3. 11.

수신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 395 동신(아) 104-301 김순근

제목 : 민원 회신

귀하가 '91. 3. 4 당부에 제출한 기술용역공제조합 설립허가의 위법성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공제사업은 보험사업의 원시적 형태로서 보험사업과 구별되는 것은 구성원이 직장·지역등 연대성이 강하고 소수이어야 하며, 공제금도 위로금 정도로서 공제료와 공제금간에 수지상등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모집행위를 하지 아니하는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만,

3. 귀하가 질의한 기술용역공제조합의 보증행위의 보험업법 위반여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4. 최근, 대법원은 보사부장관의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55세 이상된 노인을 대상으로 상조사업을 영위한 원로복지진흥회에 대하여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시('86노 1545 판결 참조)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재 무 부 장 관